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858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3.

발 의 자:이헌승·김선교·김도읍

강선영 · 서일준 · 서지영

김승수 • 박덕흠 • 고동진

유영하 • 정성국 • 윤상현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 비스이므로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.

그럼에도 국가는 「노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65세 이상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(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)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「지방자치법」 제158조(경비의 지출)는 "국가 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"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는 국가의 위임사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음.

한국철도공사도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.

그러나 도시철도운영자는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어 형 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시·도별로 고령시대(65세 이상 인구비율 14% 이상)가 도래됨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. 이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의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승객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발생하도록 한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 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을 부담함(안 제22조의2 및 제 22조의3 신설).
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2조의2(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)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(이하 "공익서비스비용"이라 한다)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 -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
 - 2.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
- 제22조의3(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) ①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(이하 "보상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
- 2.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 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
- 3.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 · 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-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.
- 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 에 의하여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22조의2(공익서비스 비용의 부 |
| | <u>담)</u> |
| | ①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 |
| | 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(이 |
| | 하 "공익서비스비용"이라 한다) |
| |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|
| | 따라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|
| |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 |
| | 담하여야 한다. |
| |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 |
| | 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|
| | 호와 같다. |
| | 1.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 |
| | 에 따르거나 국가의 정책 또는 |
| | 공공목적을 위하여 도시철도 |
| | 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|
| | 2.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 |
| | 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 |
| <신 설> | <u>생되는 비용</u> 제22조의3(공익서비스 제공에 따 |
| <u> </u> | 른보상계약의 체결) ① 원인제 |
| | 공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공익 |
| | 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 |
| | |
| | (이하 "보상계약"이라 한다)을 |

-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- 1.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도시철도 서비스의 기준과 내 용에 관한 사항
- 2.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 한 사항
- 3.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·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
- ③ 원인제공자는 도시철도운영 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 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 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

담당하게 할 수 있다.

⑤ 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 제공자와 도시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.